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8.10.12(금)10:00

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#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하유정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10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4일

3. 제안 이유

-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, 복지관 설치가 어려울 경우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치 변경(안 제2조)

나. 복지관 건물의 민간 임차 근거 마련(안 제6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, 복지관 설치가 어려울 경우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